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58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규 투자
확대 등을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완화 목적으로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기준의
재검토 기한 연장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한시적(2년) 면제(안 제7조제2항)

- 1)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점용료의 분할 납부
이자를 2년('24~'25년) 간 면제하도록 단서 신설

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9조)

2)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 3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팩스 : 044-201-55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5, 044-201-3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